고 성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 관 의 장

공 보

제447호 2020. 11. 5.(목)

조 례

고성군 조례 제2601호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3
고성군 조례 제2601호 고성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7
고성군 조례 제2601호 고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 15
고성군 조례 제2601호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21
고성군 조례 제2601호 고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 36
고성군 조례 제2601호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 48
고성군 조례 제2601호 고성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 57

입 법 예 고

고성군 공고 제2020-1694호 고성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61
고성군 공고 제2020-1710호 고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70
고성군 공고 제2020-1713호 고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개정 입법예고 ····· 78

회람									

발행: 고성군, 편집: 군정혁신담당관(670-2642, 행정 2642)

고 시

고성군 고시 제2020-247호 노인보호구역 지정 고시(동해덕곡경로당) ····· 85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백 두 현 인

2020년 11월 5일

고성군 조례 제2601호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등)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자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 및 용도) 통합계정의 재원 및 용도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따른다.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 및 용도)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 상의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율을 20%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고성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필요한 경비
3.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
4.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제5조(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 군수는 국·공채 이자율 수준, 고성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기금별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 예탁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기금업무담당 부서장
2. 기금 및 지방재정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3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담당

제14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성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

용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절차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

② 고성군 재정안정화적립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이체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삭제한다.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백 두 현** 인

2020년 11월 5일

고성군 조례 제2602호

고성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성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성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별표] (개정안)

이장 정수 및 행정리 명칭

읍면별	법정리명	정수	행정리명
고성읍	성내리	3	서내, 남내, 동내
	서외리	2	서외1, 서외2
	동외리	4	동외, 남산1, 남산2, 정동
	수남리	5	수외, 남외, 구암, 남포, 코아루
	송학리	2	송학, 무학
	기월리	2	기월, 신기
	교사리	2	교동, 사동
	대독리	2	대안, 독실
	이당리	2	면전, 이곡
	무량리	1	무량
	덕선리	2	양덕, 선동
	대평리	2	대평, 율촌
	우산리	3	내우산, 외우산, 상촌
	죽계리	3	죽동, 장계, 평계
	율대리	1	율대
	월평리	3	매수, 홍류, 거운
	신월리	2	신부, 곡용
삼산면	병산리	1	병산
	두포리	5	장지, 두모, 포교, 와도, 덕산
	미룡리	3	대포, 용호, 미동
	삼봉리	2	상촌, 해명
	장치리	2	중촌, 장백
	판곡리	1	판곡
하일면	수양리	1	수양
	용태리	2	용태, 가룡
	학림리	4	임포, 도동, 학동, 금단
	송천리	3	송천1, 자란, 송천2
	오방리	1	오방
	춘암리	3	춘암, 용암포, 맥전포
	동화리	1	동화

읍면별	법정리명	정수	행정리명
하이면	덕호리	4	두수, 부평, 신덕, 군호
	덕명리	2	공룡, 덕명
	월흥리	4	월흥, 입암, 신흥, 정곡
	사곡리	1	사곡
	석지리	4	남산, 음촌, 양촌, 신촌
	와룡리	1	와룡
	봉현리	1	봉현
	봉원리	2	외원, 내원
상리면	고봉리	2	고봉, 비곡
	신촌리	1	신촌
	오산리	3	오산, 중촌, 가동
	척번정리	3	척정, 조동, 평촌
	동산리	1	동산
	망림리	2	망림, 구미
	무선리	2	무선, 선동
	자은리	1	자은
	부포리	2	부포, 내부포
대가면	송계리	2	송계, 장전
	신전리	1	신전
	갈천리	3	외갈, 내갈, 종생
	양화리	1	양화
	연지리	2	지동, 평동
	유흥리	2	유흥, 삼계
	암전리	1	암전
	금산리	4	월촌, 세동, 신화, 가동
	척정리	3	화암, 척곡, 관동
영현면	추계리	1	추계
	봉발리	3	봉발1구, 봉발2구, 금능
	대법리	2	대촌, 법촌
	영부리	2	영부, 영동
	봉림리	1	봉림
	침점리	2	침점1구, 침점2구
	신분리	3	평촌, 매촌, 신촌
	연화리	2	연화1구, 연화2구

읍면별	법정리명	정수	행정리명
영오면	영대리	2	영대, 옥동
	오서리	1	오서
	오동리	1	오동
	영산리	3	신흥, 성산, 낙안
	성곡리	2	생곡, 금산
	연당리	4	범계, 연촌, 본양, 악양
	양산리	2	양기, 양월
개천면	명성리	2	상명, 하명
	예성리	2	덕성, 구례
	북평리	2	북평, 원동
	용안리	2	용안, 용궁
	봉치리	1	봉치
	청광리	2	청동, 청남
	나선리	1	나동
	가천리	2	가천, 차치
	좌연리	3	좌연, 좌이, 월곡
구만면	효락리	2	낙동, 효대
	주평리	1	주평
	화림리	4	신계, 화촌, 당산, 선동
	저연리	2	연동, 저동
	용와리	2	와룡, 용당
	광덕리	3	광암, 중암, 덕암
회화면	배둔리	4	관인, 가례, 양지, 안의
	당항리	1	당항
	봉동리	3	자소, 금봉촌, 동촌
	어신리	3	석전, 산북, 어선
	삼덕리	4	월계, 남진, 신천, 치명
	녹명리	1	녹명

읍면별	법정리명	정수	행정리명
마암면	두호리	1	두호
	삼락리	2	곤기, 평부
	보전리	3	보대, 전포, 동정
	화산리	3	원진, 법진, 화산
	도전리	4	명송, 도전, 용전, 초선
	장산리	1	장산
	성전리	1	성전
	신 리	1	신리
	석마리	1	석마
동해면	장기리	2	용흥, 장기
	양촌리	3	검포, 덕곡, 법동
	외산리	2	대천, 좌부천
	내산리	2	내신, 전도
	용정리	2	매정, 가룡
	장좌리	4	우두포, 상장, 하장, 구학포
	봉암리	3	장항, 입암, 동림
	외곡리	2	정남, 정북
	내곡리	2	남촌, 북촌
거류면	당동리	3	당동, 신당, 봉곡
	신용리	4	용동, 마동, 상원, 하원
	화당리	1	화당
	거산리	1	거산
	가려리	2	덕촌, 가동
	송산리	3	송정, 구현, 도산촌
	은월리	3	월치, 정촌, 신은
	용산리	1	용산
	감서리	4	봉림, 감동, 용운, 산성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별표]

이장정수 및 행정리 명칭

읍면별	법정리명	정수	행정리명
고성읍	성내리	3	서내, 남내, 동내
	서외리	2	서외1, 서외2
	동외리	4	동외, 남산1, 남산2, 정동
	수남리	**4**	수외, 남외, 구암, **남포**
	송학리	2	송학, 무학
	기월리	2	기월, 신기
	교사리	2	교동, 사동
	대독리	2	대안, 독실
	이당리	2	면전, 이곡
	무량리	1	무량
	덕선리	2	양덕, 선동
	대평리	2	대평, 율촌
	우산리	3	내우산, 외우산, 상촌
	죽계리	3	죽동, 장계, 평계
	율대리	1	율대
	월평리	3	매수, 홍류, 거운
	신월리	2	신부, 곡용
삼산면	병산리	1	병산
	두포리	5	장지, 두모, 포교, 와도, 덕산
	미룡리	3	대포, 용호, 미동
	삼봉리	2	상촌, 해명
	장치리	2	중촌, 장백
	판곡리	1	판곡
하일면	수양리	1	수양
	용태리	2	용태, 가룡
	학림리	4	임포, 도동, 학동, 금단
	송천리	3	송천1, 자란, 송천2
	오방리	1	오방
	춘암리	3	춘암, 용암포, 맥전포
	동화리	1	동화

개 정 안

[별표]

이장정수 및 행정리 명칭

읍면별	법정리명	정수	행정리명
고성읍	성내리	3	서내, 남내, 동내
	서외리	2	서외1, 서외2
	동외리	4	동외, 남산1, 남산2, 정동
	수남리	**5**	수외, 남외, 구암, **남포, 코끼루**
	송학리	2	송학, 무학
	기월리	2	기월, 신기
	교사리	2	교동, 사동
	대독리	2	대안, 독실
	이당리	2	면전, 이곡
	무량리	1	무량
	덕선리	2	양덕, 선동
	대평리	2	대평, 율촌
	우산리	3	내우산, 외우산, 상촌
	죽계리	3	죽동, 장계, 평계
	율대리	1	율대
	월평리	3	매수, 홍류, 거운
	신월리	2	신부, 곡용
삼산면	병산리	1	병산
	두포리	5	장지, 두모, 포교, 와도, 덕산
	미룡리	3	대포, 용호, 미동
	삼봉리	2	상촌, 해명
	장치리	2	중촌, 장백
	판곡리	1	판곡
하일면	수양리	1	수양
	용태리	2	용태, 가룡
	학림리	4	임포, 도동, 학동, 금단
	송천리	3	송천1, 자란, 송천2
	오방리	1	오방
	춘암리	3	춘암, 용암포, 맥전포
	동화리	1	동화

하이면	덕호리	4	두수, 부평, 신덕, 군호
	덕명리	2	**제전**, 덕명
	월흥리	4	월흥, 입암, 신흥, 정곡
	사곡리	1	사곡
	석지리	4	남산, 음촌, 양촌, 신촌
	와룡리	1	와룡
	봉현리	1	봉현
	봉원리	2	외원, 내원
상리면	고봉리	2	고봉, 비곡
	신촌리	1	신촌
	오산리	3	오산, 중촌, 가동
	척번정리	3	척정, 조동, 평촌
	동산리	1	동산
	망림리	2	망림, 구미
	무선리	2	무선, 선동
	자은리	1	자은
	부포리	2	부포, 내부포
대가면	송계리	2	송계, 장전
	신전리	1	신전
	갈천리	3	외갈, 내갈, 종생
	양화리	1	양화
	연지리	2	지동, 평동
	유흥리	2	유흥, 삼계
	암전리	1	암전
	금산리	4	월촌, 세동, 신화, 가동
	척정리	3	화암, 척곡, 관동
영현면	추계리	1	추계
	봉발리	3	봉발1구, 봉발2구, 금능
	대법리	2	대촌, 법촌
	영부리	2	영부, 영동
	봉림리	1	봉림
	침점리	2	침점1구, 침점2구
	신분리	3	평촌, 매촌, 신촌
	연화리	2	연화1구, 연화2구
영오면	영대리	2	영대, 옥동
	오서리	1	오서
	오동리	1	오동
	영산리	3	신흥, 성산, 낙안
	성곡리	2	생곡, 금산
	연당리	4	범계, 연촌, 본양, 악양
	양산리	2	양기, 양월

하이면	덕호리	4	두수, 부평, 신덕, 군호
	덕명리	2	**공룡**, 덕명
	월흥리	4	월흥, 입암, 신흥, 정곡
	사곡리	1	사곡
	석지리	4	남산, 음촌, 양촌, 신촌
	와룡리	1	와룡
	봉현리	1	봉현
	봉원리	2	외원, 내원
상리면	고봉리	2	고봉, 비곡
	신촌리	1	신촌
	오산리	3	오산, 중촌, 가동
	척번정리	3	척정, 조동, 평촌
	동산리	1	동산
	망림리	2	망림, 구미
	무선리	2	무선, 선동
	자은리	1	자은
	부포리	2	부포, 내부포
대가면	송계리	2	송계, 장전
	신전리	1	신전
	갈천리	3	외갈, 내갈, 종생
	양화리	1	양화
	연지리	2	지동, 평동
	유흥리	2	유흥, 삼계
	암전리	1	암전
	금산리	4	월촌, 세동, 신화, 가동
	척정리	3	화암, 척곡, 관동
영현면	추계리	1	추계
	봉발리	3	봉발1구, 봉발2구, 금능
	대법리	2	대촌, 법촌
	영부리	2	영부, 영동
	봉림리	1	봉림
	침점리	2	침점1구, 침점2구
	신분리	3	평촌, 매촌, 신촌
	연화리	2	연화1구, 연화2구
영오면	영대리	2	영대, 옥동
	오서리	1	오서
	오동리	1	오동
	영산리	3	신흥, 성산, 낙안
	성곡리	2	생곡, 금산
	연당리	4	범계, 연촌, 본양, 악양
	양산리	2	양기, 양월

개천면	명성리	2	상명, 하명
	예성리	2	덕성, 구례
	북평리	2	북평, 원동
	용안리	2	용안, 용궁
	봉치리	1	봉치
	청광리	2	청동, 청남
	나선리	1	나동
	가천리	2	가천, 차치
	좌연리	2	좌연, 좌이, 월곡
구만면	효락리	2	낙동, 효대
	주평리	1	주평
	화림리	4	신계, 화촌, 당산, 선동
	저연리	2	연동, 저동
	용와리	2	와룡, 용당
	광덕리	3	광암, 중암, 덕암
회화면	배둔리	4	관인, 가례, 양지, 안의
	당항리	1	당항
	봉동리	3	자소, 금봉촌, 동촌
	어신리	3	석전 산북, 어선
	삼덕리	4	월계, 남진, 신천, 치명
	녹명리	1	녹명
마암면	두호리	1	두호
	삼락리	2	곤기, 평부
	보전리	3	보대, 전포, 동정
	화산리	3	원진, 법진, 화산
	도전리	4	명송, 도전, 용전, 초선
	장산리	1	장산
	성전리	1	성전
	신 리	1	신리
	석마리	1	석마
동해면	장기리	2	용흥, 장기
	양촌리	3	검포, 덕곡, 법동
	외산리	2	대천, 좌부천
	내산리	2	내신, 전도
	용정리	2	매정, 가룡
	장좌리	4	우두포, 상장, 하장, 구학포
	봉암리	3	장항, 입암, 동림
	외곡리	2	정남, 정북
	내곡리	2	남촌, 북촌
거류면	당동리	3	당동, 신당, 봉곡
	신용리	4	용동, 마동, 상원, 하원
	화당리	1	화당
	거산리	1	거산
	가려리	2	덕촌, 가동
	송산리	3	송정, 구현, 도산촌
	은월리	3	월치, 정촌, 신은
	용산리	1	용산
	감서리	4	봉림, 감동, 용운, 산성

개천면	명성리	2	상명, 하명
	예성리	2	덕성, 구례
	북평리	2	북평, 원동
	용안리	2	용안, 용궁
	봉치리	1	봉치
	청광리	2	청동, 청남
	나선리	1	나동
	가천리	2	가천, 차치
	좌연리	3	좌연, 좌이, 월곡
구만면	효락리	2	낙동, 효대
	주평리	1	주평
	화림리	4	신계, 화촌, 당산, 선동
	저연리	2	연동, 저동
	용와리	2	와룡, 용당
	광덕리	3	광암, 중암, 덕암
회화면	배둔리	4	관인, 가례, 양지, 안의
	당항리	1	당항
	봉동리	3	자소, 금봉촌, 동촌
	어신리	3	석전, 산북, 어선
	삼덕리	4	월계, 남진, 신천, 치명
	녹명리	1	녹명
마암면	두호리	1	두호
	삼락리	2	곤기, 평부
	보전리	3	보대, 전포, 동정
	화산리	3	원진, 법진, 화산
	도전리	4	명송, 도전, 용전, 초선
	장산리	1	장산
	성전리	1	성전
	신 리	1	신리
	석마리	1	석마
동해면	장기리	2	용흥, 장기
	양촌리	3	검포, 덕곡, 법동
	외산리	2	대천, 좌부천
	내산리	2	내신, 전도
	용정리	2	매정, 가룡
	장좌리	4	우두포, 상장, 하장, 구학포
	봉암리	3	장항, 입암, 동림
	외곡리	2	정남, 정북
	내곡리	2	남촌, 북촌
거류면	당동리	3	당동, 신당, 봉곡
	신용리	4	용동, 마동, 상원, 하원
	화당리	1	화당
	거산리	1	거산
	가려리	2	덕촌, 가동
	송산리	3	송정, 구현, 도산촌
	은월리	3	월치, 정촌, 신은
	용산리	1	용산
	감서리	4	봉림, 감동, 용운, 산성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백 두 현** 인

2020년 11월 5일

고성군 조례 제2603호

고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일환으”를 “하나”로, “중·고등학교 자녀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를 “중·고등학교 및 대학생 이장자녀에 대한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에”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중 “장학금”을 “이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으로, “군수”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를 “별표의 평가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으로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수의 균형, 학교간”을 “제1항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 수의 균형, 학교 간”으로 한다.

제5조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장학금액 연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

1. 중학생: 20만원

2. 고등학생: 50만원

3. 대학생: 100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군수가 지급하는 장학금은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해서는 제8조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 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 학생의 연간 수업료에 상응하는”을 “해당 학생의 장학금을 초과하는”으로, “있을때”를 “있을 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고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별표] (신설)

평 가 기 준 (제4조제1항 관련)

1. 총점 배분

계	이장 경력	학업성적 또는 특기	이장 상훈	기장학금 수혜여부
100	30	30	20	20

2. 항목별 심사기준

가. 이장 경력

근속연수	7년 이상	6년이상 7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점 수	30	25	20	15	10	5

나. 학업성적 또는 특기

학업성적 우수분야	5급(60/100)이내 과목 수/전체 과목 수				
	90%이상	80%이상 90%미만	70%이상 80%미만	60%이상 70%미만	50%이상 60%미만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 분야	국가대표급, 각종대회 장관표창 이상 수상자	도 대표급, 도교육감 표창 수상자	군 대표급, 군수 또는 교육장표창 수상자	학교 대표급, 학교장 표창 수상자	수상경력이 없는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자
점 수	30	25	20	15	10

다. 이장 상훈: 행정기관 상훈에 한하며 상위 훈격 1개, 1회만 인정

훈 격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도지사	군수
점 수	20	15	10	5

라. 기 장학금 수혜여부

횟 수	없음	1회	2회	3회 이상
점 수	20	15	10	5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사기진작의 일환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중 · 고등학교 자녀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 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1조(목적) ---------- 하나---------- 중 · 고등학교 및 대학생 이장자녀에 대한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
제2조(장학생의 자격) ①장학생은 이장으로 1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습성취도가 ‘미’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자. 다만, 신입생은 입학전 최종학교의 성적으로 갈음한다.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분야에 시군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자 ②제1항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이장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는 자는 제외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추천) 읍 · 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3조(추천) ---------- ---------- 이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 이라 한다)---------- ------- 고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

제4조(선발) 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 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제4조(선발) ① ---------- 별표의 평가기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으로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 수의 균형, 학교 간----------.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년간 군이장 정수의 15%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제5조(장학생의 정원) ---------- 범위----------.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제6조(장학금액) ① 장학금액 연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 1. 중학생: 20만원 2. 고등학생: 50만원 3. 대학생: 100만원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군수가 지급하는 장학금은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생 략)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②---------- 대해서는 제8조에 따른 ---------- 해당----------.
제8조(지급의 정지) ①장학생으로 선발	제8조(지급의 정지) ①----------

된 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1. 당해 학생의 연간 수업료에 상응하는 타 장학금 등을 이미 받았거나 받기로 예정되어 있을 때	1. 해당 학생의 장학금을 초과하는 ---------- --------- 있을 때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②읍 · 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규칙) ---------- 필요---------- ----------.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백 두 현** 인

2020년 11월 5일

고성군 조례 제2604호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재단의 설치)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1항에 따라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3조(구성) ① 방재단에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② 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여 군수가 임명한다.

③ 부단장과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④ 방재단원은 고성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하며, 방재단에 가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방재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⑤ 읍·면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면방재단”이라 한다)의 단원은 방재단원이 되고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⑥ 읍·면방재단의 대표(이하 “읍·면 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면방재단의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제4조(임원 및 임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읍·면 대표는 읍·면방재단을 대표한다.

⑥ 단장, 부단장, 간사, 읍·면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임) ① 군수는 단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하거나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2. 고성군 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② 단장은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의회를 통하여 그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제6조(자율방재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고성군 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단장, 부단장, 읍·면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단장이 된다.

④ 협의회는 위원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의 인적 · 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 · 정비
3. 재난 예방 · 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 ·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에 필요한 인력지원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 및 방재단에 통보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등

③ 방재단은 고성군 외 지역 피해 발생 시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제8조(소집) ① 단장 또는 군수는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가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 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제9조(운영 등) ① 단원은 방재단의 활동을 한 후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방재단 활동을 확인하고 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재난안전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활동지원) ①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출된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재정적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운임,숙박비, 식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 경비. 다만, 운임, 숙박비, 식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 ·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 훈련에 드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등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용

8. 단원이 재해예방 · 대응 · 복구 등에 참여 또는 교육 · 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 지급하는 재해보상금

④ 활동비 등은 제9조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군수가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재해보상) ① 재해보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청구서를 작성하여 단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 청구가 들어온 때에는 「고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④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를 따르며,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때에는 재해보상금

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보상금을 받을 모든 유족(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이 대표자를 선정하고,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재해보상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⑥ 군수는 단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하여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출입증 소지)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군수가 발급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 ① 단원에 대한 교육은 군수가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사항은 해당년도 「민방위 교육 지침」에 따른다.

제14조(훈련)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군수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 ·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 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경비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분기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방재단에 지원한 경비에 대하여 지도 · 감독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방재단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제11조 관련)

보상등급		보상금 결정 기준	비고
요양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5년분	
장제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3월분	
유족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10년분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	제1급	유족보상금의 100/100	※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제2급	유족보상금의 88/100	
	제3급	유족보상금의 76/100	
	제4급	유족보상금의 64/100	
	제5급	유족보상금의 52/100	
	제6급	유족보상금의 40/100	
	제7급	유족보상금의 20/100	
	제8급	유족보상금의 10/100	
	제9급	유족보상금의 5/100	

비고

1. 요양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치료비·수술비·약제비·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제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

■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 <개인>
(제3조 관련)

등록번호 :

성 명	(남,여)	연 령		혈 액 형	
주 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자 격 증 또는 기능		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 난 현장경험					
희 망 활동내용					
[특이사항]					

본인은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을 희망하기에 다음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 ○ ○ (인 또는 서명)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 읍·면지역자율방재단이 되고자 하는자는 본 서식을 공통 사용한다.

■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 <단체 등>

(제3조 관련)

등록번호 :

단 체 명		대 표 자	(휴대전화:)		
주 소			대표전화		
담 당 자	(휴대전화:)	부서명			
인 원	남 명	여 명	총인원	명	
장 비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지원가능	남 (명) 여 (명)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전문분야					
활동희망분야					

[특이사항]

본 단체는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을 희망하기에 다음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 ○ ○ ○ (인 또는 서명)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구비서류	가입희망 회원명부 1부

가 입 희 망 회 원 명 부

[단체명:]

연번	성 명	성별	연령	자격증 및 기능	운전가능 여부	혈액형	비 고
1							
2							
3							
4							
⋮							

■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활 동 확 인 서(제9조 관련)

성 명	(서명또는인)	등록번호	
활동내용	사 유		
	방 법		
	시 간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시간)	
	장 소		
	내 용		
[건의사항]			
확인자 직위 읍·면 대표 성명 (인)			

본인은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써 위와 같이 활동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 확인자는 읍·면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

■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제9조 관련)

등록 번호	성 명	활 동 상 황		비고
		횟수	시간	
1				
2				
3				
⋮				

[비 고]
1. 등록번호
   - 개인의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를 기재
   - 단체의 경우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번호와 회원명부의 연번 기재 [(예시) 10-1]
2. 횟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3.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한글이나 EXCEL 등으로 관리
4.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방재단에 제출

■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5호서식]

‘○○년도 연중 활동계획서(제10조 관련)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월별	주 요 내 용	비고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 세부사항은 별도붙임 가능

※ 자치단체의 방재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요양〔 〕, 장해〔 〕, 장제〔 〕, 유족〔 〕 보상청구서(제11조 관련)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사고자	소속		전화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고자와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	사고(사망)일시		
	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		
	요양(진단)병원		요양(진단)부위
	요양(진단)결과		요양기간
청구금액	요양보상		장해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청구금액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제출서류	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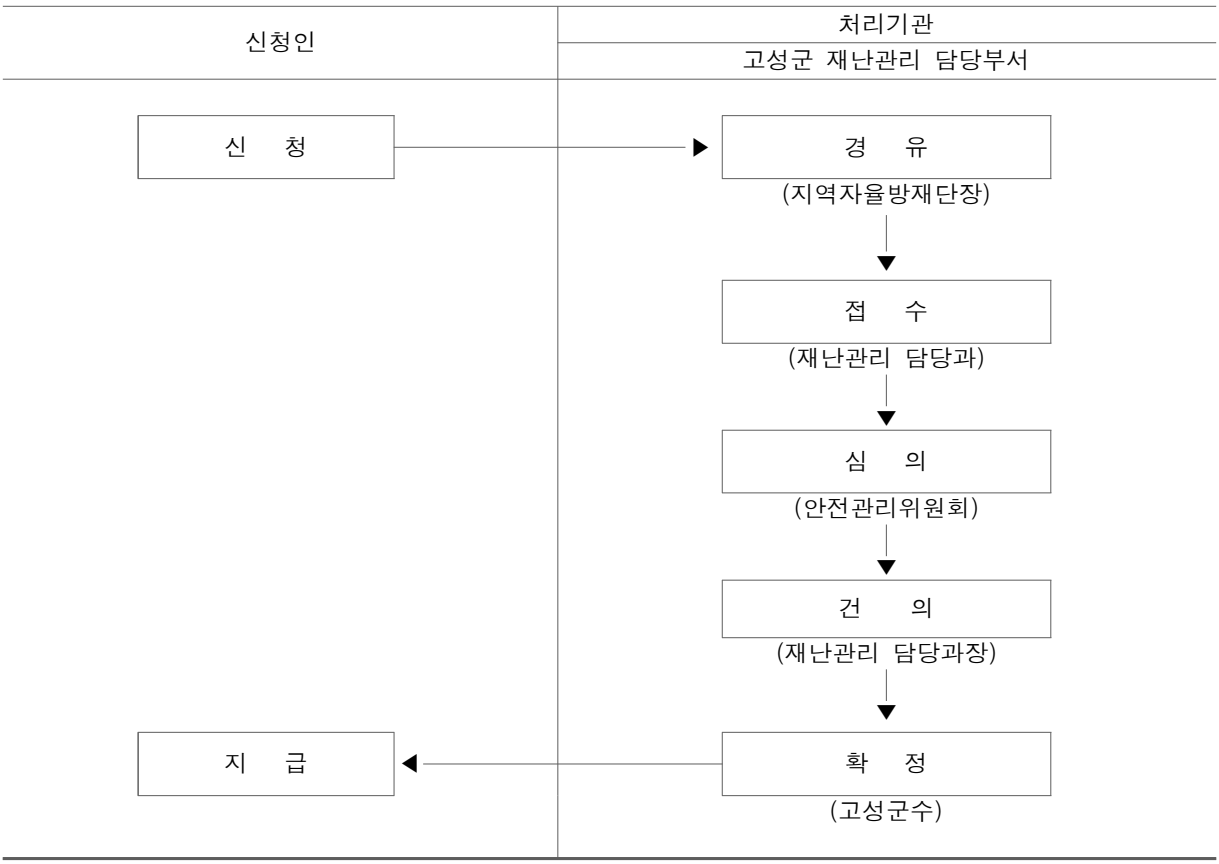

■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7호서식]

출 입 증 (제12조관련)

출 입 증

사 진
(3×4cm)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 5.5cm →

지역자율방재단원증

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
생년월일 : . . (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고 성 군 수

↑ 7.7cm ↓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백 두 현** ㊞

2020년 11월 5일

고성군 조례 제2605호

고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차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과「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을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로, "관하여 필요" 를 "필요" 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법 제7조제1항" 을 "「주차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으로 한다.

제1장에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 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수요는 조사구역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의 종류별로 나누고, 조사구역을 자동차 사용본거지로 하여 등록된 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로 나누어 조사한다.
2. 주차시설은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한다.
3. 조사시간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제3호가목 중 "법 제39조"를 "같은 법 제39조"로, "장애인사용 자동차표지"를 "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0항에 따라”를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 다만, 전기자동차는 충전목적으로 충전시설에 주차하는 경우 요금을 면제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2항”을 “법 제13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이나 실적있는 법인과 비영리법인, 사회단체 또는 개인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② 위탁료는 도로점용료, 군유재산 대부료, 주차수요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3개월 단위로 선납하여야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1조의2의 제목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운영)”을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자전거주차장”을 각각 “자전거 주차장”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자전거주차장에는 자전거주차장치”를 “자전거 주차장에는 자전거 주차장치”로, “주차장관리자”를 “주차장 관리자”로 한다.

제2장에 제1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4(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4. 「주택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의 조성사업

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규모는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노외주차장 규모는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실시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제12조 중 “영 제6조제2항”을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4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으로 한다.

3. 토지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9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성군 주차장 조례 [별표1] (현 행)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3조제1항 관련)

구분	노상 주차장			
	1시간까지			1시간 초과 (1일 주차)
	1구획 최초30분	1구획 10분마다	1시간까지	1구획 30분마다
1급지	500원	200원	1,000원	500원 (4,000원)
2급지	300원	100원	600원	300원 (4,000원)

구분	노외 주차장							
	1시간까지			1시간 초과	1일 주차권	월정기주차		
	1구획 최초30분	1구획 10분마다	1시간 까지	1구획 30분마다		주간	야간	상시
1급지	500원	200원	1,000원	500원	4,000원	40,000원	30,000원	55,000원
2급지	300원	100원	600원	300원	4,000원	25,000원	20,000원	35,000원

■ 고성군 주차장 조례 [별표1] (개정안)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3조제1항 관련)

구분	노상 주차장			
	1시간까지			1시간 초과 (1일 주차)
	1구획 최초30분까지	1구획 30분초과후 10분마다	1시간까지	1구획 30분마다
1급지	500원	200원	1,000원	500원 (4,000원)
2급지	300원	100원	600원	300원 (4,000원)

구분	노외 주차장							
	1시간까지			1시간 초과	1일 주차권	월정기주차		
	1구획 최초30분 까지	1구획 30분초과후 10분마다	1시간 까지	1구획 30분마다		주간	야간	상시
1급지	500원	200원	1,000원	500원	4,000원	40,000원	30,000원	55,000원
2급지	300원	100원	600원	300원	4,000원	25,000원	20,000원	35,000원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과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 필요----------.
제2조(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① (생 략)	제2조(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② ---------.
1. “공영주차장” 이란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 ·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1. ---------- 「주차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조제1항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조의2(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 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수요는 조사구역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의 종류별로 나누고, 조사구역을 자동차 사용본거지로 하여 등록된 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로 나누어 조사한다.
	2. 주차시설은 노상주차장 · 노외주차

	장 및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한다. 3. 조사시간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군수는 공공복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호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한다.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	3. ---------- ---------- ----------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로서 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사용 자동차표지가 부착되고, 해당 장애인이 탑승(직접 운전하거나 대리 운전하게 하여 승차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자동차	가. ---------- ---------- 같은 법 제39조-- 장애인사용 자동차등표지---------- ---------- ---------- ----------
나. · 다. (생 략)	나. · 다.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	5.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

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0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	---------- ---------- ----------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 다만, 전기자동차는 충전목적으로 충전시설에 주차하는 경우 요금을 면제한다.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 법 제13조제3항----------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비영리법인, 사회단체 또는 개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이나 실적 있는 법인과 비영리법인, 사회단체 또는 개인
<신 설>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	② 위탁료는 도로점용료, 군유재산

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제1항제1호의 경우	수의계약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군유재산 대부료 상당액	군수가 정하는 방법
제1항제2호의 경우	수의계약	주차장면적에 대한 도로 점용료 또는 군유재산 대부료 상당액	3개월 단위로 선납
기타의 경우	입찰또는 수의계 약	입찰가격 또는 수의계약 금액	입찰 또는 계약시 정하는 방법

대부료, 주차수요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3개월 단위로 선납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등) 영 제3조의2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 용적률 ·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은 다음과 같다.

1. 건폐율 : 100분의 90이하
2. 용적률 : 1천500퍼센트 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이상
4. 높이제한 : 다음 구분에 따른 비율이하로 하되,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기준으로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대지가 폭 12미터미만 도로에 접할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삭 제>

나.대지가 폭 12미터이상도로에 접할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폭배. 다만, 배율이 1.8배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제11조의2(자전거주차장의 설치운영)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노외주차장 총 면적의 100분의 5 이상의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자전거주차장에는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고, 그 유지관리는 주차장관리자가 하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1조의2(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운영)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 ----- 자전거 주차장---------- ----------. 1. ---------- ---------- 자전거 주차장----------.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2. 자전거 주차장에는 자전거 주차장치---------- 주차장 관리자---------- ----------.
<신 설>	제11조의4(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4.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의 조성사업 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노외주차장 규모는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실시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제12조(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2조(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 ----------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제14조(주차장설치비용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5대 미만으로 한다.	<삭 제>
제14조의2(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제14조의2(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토지가액은「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3. 토지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②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3.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시행규칙) ---------- 필요----------.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백 두 현** ㊞

2020년 11월 5일

고성군 조례 제2606호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7항 중 “따른다”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3조의7제5항 중 “실·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를 “조례”로 한다.

제9조의2 중 “영 제15제5항”을 “영 제15조제5항”으로 한다.

제9조의3제1항 중 “법 제25조제12항”을 “법 제25조제14항”으로 한다.

제10조제5항제3호 중 “3일내에”를 “3일 내에 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조제3항 및”을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대지안의 조경)”을 “(대지의 조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대지안”을 “대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10호”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0호”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공개공지”를 “공개 공지”로, “공개공간(이하 “공개 공지 등”)”을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개공지 등”을 “공개공지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영 제27조의2제3항 각 호의 준수여부를”을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 대하여”로, 같은 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공개공지 등”을 각각 “공개공지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공개공지 등의 설치면적”을 “공개공지등의 설치면적”으로, “공개공지 등의 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5

항 중 “공개공지 등”을 각각 “공개공지등”으로 한다.

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긴의자, 파고라, 분수탑, 미술장식품, 시계탑, 분수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말한다.

제32조의5제1항 중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를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로 한다.

제32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 및 영110조의6제1항제5호”를 “영 제110조의6제5호”로 한다.

제32조의7제1항 중 “법 제77조의14제1항”을 “법 제77조의15제1항”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를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9조의3제1항 중 “건축조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70”을 “50”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구성 및 임기) ① ~ ⑥ (생략)	제3조의2(구성 및 임기)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제6항을 위반하여 중복 위촉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위원회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 위촉 해제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와 영 제5조의3을 따른다.	⑦ ---------- 준용한다.
제3조의7(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④ (생 략)	제3조의7(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른 심사관은 건축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 · 과장으로 한다.	⑤ ---------- 부서장---------.
제4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 영 · 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의 완화) ① ---------- 조례----------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은 영 제15제5항 및 제8조제3항 각 호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제9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 영 제15조제5항 ----------.

제9조의3(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라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 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따르고, 상주감리는 대가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따르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에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의3(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4항---------- ---------- ---------- ---------- ---------- ---------- ---------- ----------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 ④ (생 략)	제1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제2호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에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 선정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⑤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업무대행자로 지정된 건축사는 허가권자로부터 사용승인검사 등을 위한 도면을 교부(세움터 권한지정 포함)받고 현장조사·검사 등을 실시한 후 3일내에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군수에게 제출(건축행정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건축주에게 검사비용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3. ---------- ---------- ---------- ---------- 3일 내에 시행---------- ---------- ---------- ---------- ----------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⑥ 삭 제	
⑦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군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기술사의 노임단가를 준용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⑦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⑧·⑨ (생 략)	⑧·⑨ (현행과 같음)
제12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대지의 조경) ① ---------- ---------- ---------- ----------.
1. 연면적 (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1. --------- 대지---------- ---------- ----------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④ ---------- ---------- ----------.

아니할수 있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10호에 따른 관광 · 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0호----------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2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 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 · 주상복합건축물 · 의료시설 · 운동시설 · 위락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32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공개 공지---------- 공개 공간(이하 “공개 공지등”----------.
②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다.	② ---------- 공개공지 등----------.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긴의자, 파고라, 분수탑, 미술장식품, 시계탑, 분수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말한다.
③ 군수는 영 제27조의2제3항 각 호의 준수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 · 관리하여야 하며, 5년에 1회 이상 공개	⑥ -----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 대하여 ---------- 공개공지등

공지 등의 관리실태 및 활용방안에 관한 전문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100분의 12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 ----------.
1. 용적률의 완화 : [1+(공개공지 등 면적÷대지면적)]×「고성군 계획조례」 제57조에 따른 용적률	1. ----------공개공지등 ----------
2. 높이제한의 완화 : [1+(공개공지 등 면적÷대지면적)]×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2. ----------공개공지등 ----------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함에 있어 공개공지 등의 설치면적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필로티 구조로 된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그 면적의 2분의 1을 산입	3. ---------- 공개공지등의 설치면적---------- ---------- 공개공지등의 면적----------
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 공개공지등---------- ----------. ---------- 공개공지등----------.
제32조의5(건축협정의 체결 등)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32조의5(건축협정의 체결 등)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구역을 말한다.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의6(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 및 영110조의6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2조의6(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영 제110조의6제5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32조의7(결합건축 대상지) ① 법 제77조의14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국토의 계획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수립된 지역을 말한다.	제32조의7(결합건축 대상지) ① 법 제77조의15제1항 ----------.
제39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사항에서 따른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제39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80조제5항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1회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0조제5항	④ ----------. <단서 삭제>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는 총 3회로 한다.	
제39조의3(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2년을 말한다.	제39조의3(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③ ---------- 50----------.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백 두 현** 인

2020년 11월 5일

고성군 조례 제2607호

고성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 지위향상 · 모성보호 · 보육여건 개선 · 삶의 질 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어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여성농어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 다.

제3조(군수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 · 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 공급함으로써 농어업 · 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농어촌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수립 및 협조)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체계)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범위) 군수는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군 자체시책으로써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회 설치)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여성농어업인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농어업인 육성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여성농어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어업인 및 여성농어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축산과장, 식품산업과장, 해양수산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여성농어업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다. 여성농어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농업인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군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어업 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교육, 농어업 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2. 여성 농어업인 전담 교육 시설 지원
3. 여성농어업 후계 인력의 육성
4.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5. 농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영농(營農)·영어(營漁) 작업 환경 정비 및 자동화 설비 지원
6. 독립적인 농어업 경영을 하려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경영 상담과 자금의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2. 농어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어촌지역 아동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
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5.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충 상담
6.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16조(여성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증진,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공익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공고 제2020-1694호

고성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1. 5.
고 성 군 수

1. 개정이유
행안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침」 변경으로 기존 우리 군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에 통합되었던 건강검진비와 단체보장보험 가입 예산을 분리 편성하여 직원 복지 향상 및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함.

2.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가. 후생복지사업의 종류 추가 및 내용변경(안 5조)
1)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비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
2) 소속 공무원의 단체보장보험 가입 지원

3.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0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 및 기타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행정과장 후생단체담당
1) 주소: (52943)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행정과
2) 전화: (055)670-2116, 팩스: (055) 670-2109

다. 제출 방법 및 문의처

1)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행정과 후생단체담당〔전화: (055)670-211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1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비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

11. 소속 공무원의 단체보장보험 가입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10.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비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
<신 설>	11. 소속 공무원의 단체보장보험 가입 지원
11. (생 략)	12. (현행 제11호와 같음)

붙임 **비용추계서**

고성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관련 조문

제5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0.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비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
11. 소속 공무원의 단체보장보험 가입 지원

나. 비용발생 요인

-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장보험 가입 지원 경비를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외로 운영함에 따라 예산 투입 필요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건강검진비 지원

- 2016년 ~ 2020년 5년간 건강검진 대상자 수 평균(512명)을 향후 5년간(2021년 ~ 2025년) 비용 추계에 적용

2) 단체보장보험가입 지원

- 단체보장보험 예정가격 1인 단가(320천원)를 향후 5년간(2021년 ~ 2025년) 비용 추계에 적용

나. 추계의 결과

1) 건강검진비 지원

- 산출근거: 512명 × 200,000원 = 102,400천원(연간)
- 5년간 512,000천원(군비)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단위: 명, 천원)

구 분		1차년도 (21년)	2차년도 (22년)	3차년도 (23년)	4차년도 (24년)	5차년도 (25년)	합계
세출	301-01	102,400	102.400	102,400	102,400	102,400	512,000
세입	해당없음						

2) 단체보장보험 가입 지원

- 산출근거: 1,023명 × 320,000원 = 327,360천원(연간)
- 5년간 1,636,800천원(군비)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단위: 명, 천원)

구 분		1차년도 (21년)	2차년도 (22년)	3차년도 (23년)	4차년도 (24년)	5차년도 (25년)	합계
세출	301-01	327,360	327,360	327,360	327,360	327,360	1,636,800
세입	해당없음						

3. 관련 의견: 소속 공무원의 복지와 근무능률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사업 시행을 위해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작성자: 행정과장 박 문 규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 · 휴양 · 안전 · 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 · 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5. 5. 18.>

[전문개정 2008. 12. 31.]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기준경비)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의회관련 경비중 의원국외여비 · 의정운영공통경비 · 의회운영업무추진비 ·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 의원정책개발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1과 같다.
2. 업무추진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2와 같다.
3. 지방보조금의 기준경비는 별표 3과 같다.
4. 통장 · 이장 · 반장 활동보상금의 기준경비는 별표 4와 같다.
5.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제5호의 규정

에 따라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기준경비는 별표 5, 일·숙직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6, 교육강사수당의 기준경비는 별표 7과 같다.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별표 5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① 경비성격 :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② 기 준 액 : 2021년 맞춤형 복지비 기준액은 최근 3년간 평균치인 136만원이내(1인당 평균)로 설정

③ 편성방법

- 해당 자치단체 ’20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기준액 이상인 자치단체는 ’20년과 동일하게 편성(인상불가) 또는 기준액 이내로 편성
-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내에서 통합운영(후생복지에 관한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집행)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성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 의견 내용(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찬반의견		수정안	수정사유
	찬성	반대		

고성군 공고 제2020-1710호

고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1. 5.

고 성 군 수

1. 제정 이유

고성군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 및 육성을 위한 고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재단의 설립(안 제2조)
- 사업, 사무국(안 제3조 ~ 제4조)
- 재산의 조성, 재정 지원, 수익사업(안 제5조 ~ 제7조)

3. 의견 제출

고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0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참조: 교육청소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교육청소년과 교육지원담당

1) 주소: (52943)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교육청소년과

2) 전화: (055)670-2613, 팩스: (055) 670-4659

다. 의견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무방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교육청소년과 교육지원담당(☎ 055-670-261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1부. 끝.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 및 육성을 위한 고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단의 설립) 고성교육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아동·청소년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기획 및 지원
2. 학교 교육과정 연계·지원에 관한 사업
3.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의 장학사업
4.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5. 행복교육지구에 관한 사업
6. 지역 교육발전 연구·개발 및 학술활동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재단의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무국) ①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고성군의 출연금
2. 개인이나 법인, 단체의 기부금
3. 재산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제6조(재정 지원) 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붙임 **비용추계서**

고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관련조문 및 비용 발생 요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제6조(재정 지원) 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나. 비용 발생 요인

○ 고성군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 및 육성을 위한 사업비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사업대상: 관내 아동 및 청소년 6,400여명

2) 사업규모: 행복교육지구사업 외 연 평균 20억 원 소요

나. 추계의 결과

(단위 : 천 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 계
세입	군비	3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8,300,000
세출	군비	3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8,300,000

※ 2020년은 재단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 2억, 보통재산 1억 산정

다. 재원조달방안: 일반회계 편성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 계
재원 조달	의존재원						
	자체재원	3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8,300,000
	기 타						
	소 계	3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8,300,000

작성자: 교육청소년과장 유 정 옥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 의견 내용(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찬반의견		수정안	수정사유
	찬성	반대		

고성군 공고 제2020-1713호

고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개정 입법예고

「고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1. 5.
고 성 군 수

1. 개정이유
   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 활성화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
   나. 도시교통과-75850(2020.10.21.)「2021년은 교통사고 없는 원년의 해」 추진계획 수립

2.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가. 운전자(만70세 이상)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면허증 반납자에 대한 지원금액 확대
   나. 현행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1회 발급 ⇒ 개정 교통카드 2회 발급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0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참조: 도시교통과 교통행정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 및 기타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도시교통과 교통행정담당
      1) 주소: (52943)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도시교통과
      2) 전화: (055)670-4683, 팩스: (055) 670-2559

다. 제출 방법 및 문의처

1)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도시교통과 교통행정담당〔전화: (055)670-46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조례 개정(안) 1부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10만원 이내의 교통카드 등을 한 차례만”를 “10만원 이내의 교통카드 등을 두 차례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만원 이내의 교통카드 등을 한 차례만 지원할 수 있다.	제2조(정의) ---------- ---------- ---------- ---------- ----------두 차례만 지원 ----------

붙임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고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2021년 5,000천원 예산 편성(예상인원 50명)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해당 조례개정안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규 1억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작성자: 도시교통과 최 대 석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7. 7. 26., 2018. 3. 27., 2018. 12. 24.>

20.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지방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 의견 내용(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찬반의견		수정안	수정사유
	찬성	반대		

고성군 고시 제2020-247호

고성군 노인보호구역 지정 고시

교통약자인 노인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20. 11. 4.

고 성 군 수

1. 목적

○ 노인 보호구역을 왕래하는 운전자에게 보호구역지정 사실을 알려 교통 안전 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3.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시 설 명	시설의 주소	보호구역 지정구간	비고
동해덕곡 경로당	고성군 동해면 양촌리 574-3번지	· 주변도로 L=400m	

※붙임 : 노인보호구역 지정범위 참조

4. 보호구역 저정관련 문의처 : 고성군 건설과(055-670-2584)

노인보호구역 지정 위치

대상시설	동해덕곡경로당	위 치	고성군 동해면 양촌리 574-3번지 인근 (국도77호, 지방도1010호)
내 용	노인보호구역 신규지정	연장(L=)	400

대상시설	동해덕곡경로당	위 치	고성군 동해면 양촌리 574-3번지 인근 (국도77호, 지방도1010호)
내 용	노인보호구역 신규지정	연장(L=)	400m